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9. 30 선고 2022가단5133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순천시

소송대리인 A, B, C, D, E

피 고 F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호

변 론 종 결 2022. 9. 16.

판 결 선 고 2022. 9.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G 주식회사가 2019. 5. 3.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체결한 자동차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G 주식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 1)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2019. 4. 3.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지방소득세(법인소득) 91,356,040원을 납부기한 2019. 4. 30.까지로 정하여 신고하였으나, 위 기한까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2) 이에 원고는 2019. 6. 3. G에 2018년 귀속 지방소득세(법인소득) 92,132,560원을 납부기한 2019. 6. 30.까지로 정하여 부과 고지하였다.
- 3) G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고, 2022. 2. 1.을 기준으로 위 지방소득세의 본세와 가산금은 합계 94,033,720원이다.

나. 이 사건 차량양도계약

- 1) G은 2019. 5. 3. 피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양도하는 내용의 자동차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 2)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는 저당권자 H 주식회사, 채무자 G, 채권가액 22,500,000원으로 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피고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함에 따라 2022. 3. 8. 위 저당권이 말소되었다.

다. G의 자산상태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G의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 보증채무 등 1,263,556,040원 상당의 채무(I에 대한 합계 1,752,684,740원의 이행하자보증보험 가입금액 제외)가 있었다. 반면 적극재산으로는 3,658,547원 상당의 J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725,568,764원 상당의 K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시가 31,61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차량, 시가 2,825,000원 상당의 별지 제2목록 기재 차량, 시가 2,857,000원 상당의 별지 제3목록 차량, 시가 5,682,000원 상당의 별지 제4목록 건설기계 등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G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사해행위 당시의 이 사건 차량가액 31,6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G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사해행위가 성립하더라도 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차량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양도계약 후 피고의 변제로 말소되었으므로 변론종결 당시의 이 사건 차량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범위에서만 가액배상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다툼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G이 2019. 4. 3.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지방소득세(법인소득) 91,356,040원을 납부기한 2019. 4. 30.까지로 정하여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2019. 6. 3. G에 위 지방소득세 92,132,560원을 납부기한 2019. 6. 3.0.까지로 정하여 부과 고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지방소득세의 과세요건은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미 충족되었으므로, 그 시점에 피고의 조세채무는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2)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G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포함하여 1,263,556,04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729,227,311원 상당의 예금채권, 시가 합계 42,974,000원 상당의 차량 및 건설기계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밖에 부동산 등의 고정자산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G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내역을 비교하여 보면, G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G이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L 주식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2019. 5. 24.경부터 5. 30.경까지 합계 719,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다툰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G 명의의 예금계좌에 2019. 5. 24.에 449,000,000원이, 2019. 5. 30.에 160,000,000원이, 2019. 5. 31.에 110,000,000원이 각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G의 공사대금채권이 일반채권자들이 만족을 얻는 물적 기초가 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G 명의의 예금계좌의 입출금내역에 비추어 보면 G이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채무를 변제할 자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한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그 재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그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2019년 당시의 이 사건 차량의 가액이 31,610,000원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가액은 이 사건 차량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인 22,500,000원을 초과하므로, G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한 행위는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1)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 상당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로 자동차가 수익자에게 이전된 후 사해행위 전에 마쳐진 저당권설정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양도계약 후 이 사건 차량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차량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한도에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변론종결시에 가까운 2022. 10. 기준으로 이 사건 차량의 가액이 20,640,000원에서 20,810,000원 사이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차량의 가액이 위 금액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차량의 가액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 22,500,000원에 미치지 아니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차량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다.

4) 따라서 이 사건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차량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윤미

[별지]

자동차의 표시

[제1목록]

자동차등록번호 :

차 종 : 승용자동차

차 명 : 팰리세이드(PALISADE)

차대번호 :

제작연월일 : 2018. 11. 29.

등록연월일 : 2019. 2. 12.

[제2목록]

자동차등록번호 :

차 종 : 화물자동차

차 명 : 봉고Ⅲ 1톤

차대번호 :

제작연월일 : 2011. 4. 11.

등록연월일 : 2014. 4. 22.

[제3목록]

자동차등록번호 :

차 종 : 화물자동차

차 명 : 봉고Ⅲ 1톤

차대번호 :

제작연월일 : 2011. 8. 10.

등록연월일 : 2018. 2. 12.

[제4목록]

건설기계등록번호 :

건설기계명 : 지게차

차대번호 :

제작연월일 : 2012. 10. 19.

등록연월일 : 2012. 11. 15.

